

『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7월 3일

나. 발 의 자 : 김정곤, 김성현, 강승수, 권기만, 박세진, 박주연,
손홍섭, 윤영철, 정하영, 허 복, 황경환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7월 9일

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정 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도서관법」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의거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(안 제6조)
 - 1,000권이상의 장서, 6석 이상의 열람석, 33㎡ 이상의 건물면적
-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(안 제7조)
 -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 신청
-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○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3조, 제5조 , 「도서관법」 제4조, 제4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도서관법」 및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에 의거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, 설립 기준(안 제6조), 등록 절차(안 제7조) 예산지원(안 제9조) 등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, 「도서관법」,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 부합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,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,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,

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2개소로써 주민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확충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은 물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